

심 사 보 고 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안 변 호	927
------------	-----

2026. 4.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4. 7. / 남양주시장
- 회부일자 : 2026. 4. 7.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4. 23. / 2026. 4. 24.
 - 제319회 임시회 1차 및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 정 / 제안설명 (서면)
 - 검토보고 (서면) / 질의 및 답변
 - 계수조정 / 의결

2.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585,667,539	100.00%	2,345,787,006	100.00%	239,880,533	10.23%
일반회계		2,263,196,032	87.53%	2,109,797,469	89.94%	153,398,563	7.27%
특별회계		322,471,507	12.47%	235,989,537	10.06%	86,481,970	36.65%
	공기업특별회계	206,852,247	8.00%	159,311,380	6.79%	47,540,867	29.84%
	기타특별회계	115,619,260	4.47%	76,678,157	3.27%	38,941,103	50.7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458억 원 보다 2,399억 원이 증가한 2조 5,857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34억 원 증가된 2조 2,63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65억 원 증가된 3,225억 원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용관)

- 상임위 예비심사 참조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보고 요지

- 세입 예산과 관련하여 일부 위탁비 반환 수입 등의 항목이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단순 계정 명칭만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함. 이는 예산의 투명성과 심사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향후에는 반환 사유와 대상 사업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기명을 상세히 기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주문함.
- 세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 취지를 엄격히 준수하여,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유에 한해서만 재원이 배분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특히 일부 사업에서 나타난 절차적 미흡함에 대해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의기관인 의회와 유기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치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등으로 기재함

심 사 보 고 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928
----------	-----

2026. 4.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4. 7. / 남양주시장
- 회부일자 : 2026. 4. 7.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4. 23. / 2026. 4. 24.
 - 제319회 임시회 1차 및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 정 / 제안설명 (서면)
 - 검토보고 (서면) / 질의 및 답변
 - 계수조정 / 의결

2.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금	2025년도말 현재액(A)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말 현재액 (D=A+B-C)	증감 (E=D-A)
		수입(B)	지출(C)		
계	325,958,982	72,420,585	24,519,407	373,860,160	47,901,17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03,811,942	71,909,149	22,899,407	352,821,684	49,009,742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22,147,040	511,436	1,620,000	21,038,476	△1,108,56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수금 수입 증액

※ 신청사건립기금: 전입금 편성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증액

3. 검토보고 요지

- 상임위 예비심사 참조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보고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등으로 기재함.